

의안번호	제 422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6년 6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2
----------	-----

제출연월일 : 2016. 6.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청 국(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을 신설함

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20호)

다.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함

1)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예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22호)

2) 장학금 및 교육복지예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23호)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24호)

라. 직속기관예 분원 또는 분관을 설치함

1) 중앙도서관 분관예 미원도서관을 설치함(안 제16조의2)

2) 학생교육문화원 분원예 학생교육문화관을 설치함(안 제19조의2)

3) 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예 충주영어체험센터, 북부영어체험센터, 남부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함(안 제25조의2)

4) 충주학생회관 분관예 중원도서관을 설치함(안 제37조의2)

5) 학생해양수련원 분원예 제주수련원을 설치함(안 제46조의5)

마.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하여 학생해양수련원을 신설함
(안 제41조부터 제46조의5)

바. 청명학생교육원의 공립형 대안중학교 변경 설립예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6. 3. ~ 6. 23.): 별첨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당관, 과장, 단장”을 “과장, 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국 및 행정관리국”을 “교육국 및 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제6조제1항제5호 중 “교원”을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을 “학교보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학생수용계획”을 “학생배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조직 및 지방공무원”을 “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3.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2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법”이라 한다”를 “”법”이라 한다”로, “교육자료”를 “교육 자료”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를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과학·기술교육”을 “과학·수학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과학”을 “과학, 수학 및 진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연수원””을 “”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연수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연수원”을 “연수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연수원장”을 “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제3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제1항 중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문화예술 체험”으로, “”학생교육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학생교육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생교육문화원”을 “문화원”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를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교육문화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하고, 제19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수영장 운영

제19조에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제4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분원) 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제21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각급학교 학생들”을 “학생들”로 하고, 제2호 “단체 단원들”을 “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제5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야영장 및 휴양소) 수련원에 두는 야영장 및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제문화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제4호 중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를 “외국어교육원 기능수행”으로 한다.

제3장 제6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분원) 외국어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26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7과”로 한다.

제27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를 “청명학생교육원 기능수행”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육정보원””을 “”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정보원”을 “정보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정보원”을 “정보원”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5조제1항 중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를 “지식·정보 제공으로”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충주학생회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주학생회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제10절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분관) 충주학생회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아교육”을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으로 한다.

제3장 제12절(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 제13절(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4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절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제46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진취적 기상 및 호연지기를 지닌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제46조의3(원장) ①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4(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3.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학생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6조의5(분원) 해양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47조 중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을 “교직원복지회관을”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0과 같다.

제49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제51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7로 하고, 별표 7(중전의 별표 1) 제목 중 “특성화고등학교등 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10로 하고, 별표 10(중전의 별표 2) 중 중원도서관란, 청원도서관란을 각각 삭제 한다.

별표 3을 별표 11로 하고, 별표 5를 별표 12로 하며,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은 2017년 2월 28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제16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미원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별표 2]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19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북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별표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야영장 및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제22조의2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야영장	제천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휴양소	영동휴양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쌍곡휴양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

[별표 5]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25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충주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
남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별표 8]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제37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충원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별표 9]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46조의5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29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2. 3. (생략)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 -----. 1. ----- ----- <u>과장, 담당관</u>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교육국 및 행정관리국</u> 을 둔다.	제5조의2(국의 설치) ----- ----- ----- <u>교육국 및 행정국</u> -----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u> 5. <u>교원의 자격·인사·교육·복리</u> 에 관한 사항 6. ~ 11. (생략) 12. <u>학교보건 및 학교급식</u> 관련 업무 13. ~ 16. (생략) 17. <u>학교평가에 관한 사항</u> 18. 19. (생략) <u><신설></u>	제6조(교육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외유학에 관한 지도</u> 5. <u>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u> ----- ----- 6. ~ 11. (현행과 같음) 12. <u>학교보건</u> ----- 13. ~ 16. (현행과 같음) <u><삭제></u> 18. 19. (현행과 같음) 20. <u>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 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7조(행정관리국) ① <u>행정관리국</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7.·8. (생략) 9. <u>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u> 10. (생략) 11. <u>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u> 12. <u>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u> 13. <u>법제에 관한 사항</u> 14. <u>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u> 15. ~ 17. (생략) 18. <u>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u> 19. ~ 2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u>법</u>")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국) ① <u>행정국장</u>----- -----. 1. ~ 5. (현행과 같음) 6. <u>학생배치계획</u>----- ----- 7.·8. (현행과 같음) <삭제> 10. (현행과 같음) 11. -----<u>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u>----- 12. <u>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u> ----- <삭제> <삭제> 15. ~ 17. (현행과 같음) <삭제> 19. ~ 21. (현행과 같음) 22. <u>교육공무원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u> 23. <u>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 24. <u>학교급식에 관한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 ----- ----- "<u>법</u>"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u>교육자료를</u> 개발하며 <u>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u>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 <u>교육 자료</u> ----- ----- <u>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업무)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과학·기술교육</u>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6. <u>과학·수학교육</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u>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u>과학</u>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10. <u>과학, 수학 및 진로</u> -----
<신설>	11. <u>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u>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u>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	제11조(설치) ① ----- ----- <u>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u> ----- -----

현행	개정안
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u>교육연수원</u>"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u>교육연수원</u>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 제12조(원장) <u>교육연수원</u>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u>소속공무원</u>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u>교육연수원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5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u>소속공무원</u>을 지휘·감독한다. <u><신설></u>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생략)	----- -----"<u>연수원</u>"----- --. ② <u>연수원</u>----- ----- -----. 제12조(원장) <u>연수원</u>----- ----- -----<u>소속 공무원</u>-----. 제13조(업무) <u>연수원장</u>-----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제15조(관장) ① ----- ----- -----<u>소속 공무원</u>----- ② <u>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16조(업무) -----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6. 그 밖에 <u>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u> <u><신 설></u>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u>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u>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u>학생교육문화원</u>")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u>학생교육문화원</u>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에 둔다. 다만, <u>학생교육문화원</u>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59번길 33에 둔다. 제18조(원장) ① <u>학생교육문화원</u>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6. <u>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7. ----- <u>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제16조의2(분관) 도서관에 두는 <u>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 제17조(설치) ① ----- ----- ----- -----<u>문화예술 체험</u>----- ----- ----- -----<u>"문화원"</u>----- -----. ② <u>문화원</u>----- ----- -----<u>문화원</u>----- ----- -----. 제18조(원장) ① <u>문화원</u>에 원장을 두며-----

현행	개정안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19조(업무) <u>학생교육문화원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u>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신설> 제5절 <u>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u>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u>청소년기본법</u>」 제26조에 따라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 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u>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u>(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련원은 <u>충청북도 진천군</u>	----- <u>소속 공무원</u>-----. ② <u>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19조(업무) <u>문화원장</u>----- -----. 1. ~ 4. (현행과 같음) 5. <u>학생수영장 운영</u> 6. 그 밖에 <u>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제19조의2(분원) <u>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u> 제5절 <u>충청북도학생수련원</u> 제20조(설치) ① ----- 및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 ----- ----- ----- ----- - <u>충청북도학생수련원</u>----- -----. ② 수련원은 <u>충청북도 진천군</u>

현행	개정안
<u>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진여울길 65,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으로 153-3,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에 둔다.</u>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u>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u>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u>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u>단체 단원들의</u> 야영과 수련활동 3. (생략) <u><신설></u> <u><신설></u>	<u>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u> 제21조(원장) ----- ----- -----<u>소속 공무원</u>----- -----. 제22조(업무) ----- -----. 1. <u>학생들</u> ----- ----- 2. -----<u>단체</u>-----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u>제22조의2(야영장 및 휴양소) 수련원에 두는 야영장 및 휴양소의</u>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설치) ① <u>법 제32조에 따라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u>
제23조(설치) ② (생략)	제23조(설치) ① <u>법 제32조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제문화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제24조(원장) ①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u><신 설></u>	제24조(원장) ① ----- ----- ----- <u>소속 공무원-----.</u>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외국어 교육활동 및</u>	제24조(원장) ② <u>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25조(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외국어교육원 기능수행</u>

현행	개정안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 제25조의2(분원) 외국어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26조(설치) ① (생략)	제2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 - 별표 7과 --.
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장) ----- -----소속 공무원-- ----
제30조(원장)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원장) ----- -----소속 공무원-----.
제31조(업무) (생략)	제31조(업무)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 -----청명학생교 육원 기능수행-----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교육	제32조(설치) ① ----- -----"정보원"--

현행	개정안
<u>정보원</u>"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u>교육정보원</u>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 제33조(원장) <u>교육정보원</u>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업무) <u>원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생략) 6. <u>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업무</u>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u>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② (생략) 제36조(관장) ① (생략)	-----. ② <u>정보원</u>----- -----. 제33조(원장) <u>정보원</u>----- ----- ----- -----. 제34조(업무) <u>정보원장</u>-----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제35조(설치) ① ----- ----- ----- -----<u>지식·정보 제공으로</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관장)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7조(업무) <u>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u>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40조(업무) <u>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u> 1. ~ 4. (생 략)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유아교육에 관한 사항</u> <u>제12절</u> <u>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u> 제41조 (설치) ① <u>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u>	<u>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37조(업무) <u>충주학생회관장</u>-----. 1. ~ 5. (현행과 같음) <u>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주학생회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u>제37조의2(분관) 충주학생회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8과 같다.</u> 제40조(업무) <u>유아교육진흥원장</u>-----. 1. ~ 4. (현행과 같음) 5. ----- <u>--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육정보령교육원(이하 "보령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보령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u> <u>제42조(원장) 보령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제43조(업무) 보령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u>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해양수련활동</u> <u>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삭 제></u>
<u>제13절</u> <u>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u> <u>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이하 "제주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② 제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29에 둔다.</u> <u>제45조(원장) 제주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제46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u> <u>1. 학생 체험활동 및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u>2.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u> <u>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제14절</u> <u>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u> <u>제46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진취적 기상 및 호연지기를 지닌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u> <u>제46조의3(원장) ①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제46조의4(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u>1.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청소년 단체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u> <u>3.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u> <u>4. 학생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u>5.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제46조의5(분원) 해양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u>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u>교직원복지회관</u>,	제47조(설치) ----- ----- ----- <u>교직원복지회관</u>을

현행	개정안
<u>영어체험센터</u>를 둔다. 제48조(도서관) ① (생략)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u>소속공무원</u>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④ 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 <u>【별표 2】와 같다.</u> 제49조(학생회관) ① (생략) 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u>소속공무원</u>을 지휘·감독한다. ③ 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u>【별표 3】과 같다.</u> 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 (생략) 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u>소속공무원</u>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u>【별표 5】와 같다.</u> <u>제52조(영어체험센터) ① 초·중등</u>	-----. 제48조(도서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속 공무원</u>-----.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0과 같다.</u> 제49조(학생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속 공무원</u>-----. ③ <u>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u> 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속 공무원</u>-----. ③ <u>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한다.</u> <u>② 영어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③ 영어체험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6과 같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별표 1] <u>충청북도중앙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제16조의2 관련)</u>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미원도서관</td><td>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td></tr> </table> [별표 2] <u>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19조의2 관련)</u>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충청북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관</td><td>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td></tr> </table> [별표 3] <u>충청북도학생수련원 아영장 및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제22조의2 관련)</u>	명칭	위치	미원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명칭	위치	충청북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명칭	위치								
미원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명칭	위치								
충청북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현행	행	개정안																														
<신설>		<table><tr><th>구분</th><th>명칭</th><th>위치</th></tr><tr><td rowspan="2">야영장</td><td>제천야영장</td><td>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td></tr><tr><td>옥천야영장</td><td>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td></tr><tr><td rowspan="2">휴양소</td><td>영동휴양소</td><td>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td></tr><tr><td>쌍곡휴양소</td><td>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td></tr></table> [별표 5]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25조의2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r><tr><td>충주영어체험센터</td><td>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td></tr><tr><td>북부영어체험센터</td><td>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td></tr><tr><td>남부영어체험센터</td><td>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td></tr></table> <삭제>	구분	명칭	위치	야영장	제천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휴양소	영동휴양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쌍곡휴양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	명칭	위치	충주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	남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구분	명칭	위치																														
야영장	제천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휴양소	영동휴양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쌍곡휴양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																														
명칭	위치																															
충주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																															
남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별표 6]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제52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r><tr><td>충주영어체험센터</td><td>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td></tr><tr><td>남부영어체험센터</td><td>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td></tr><tr><td>북부영어체험센터</td><td>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td></tr></table> [별표 1] 특성화고등학교등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제26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설치 학교</th><th>위치</th></tr><tr><td>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td><td>청주농업 고등학교</td><td>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td></tr><tr><td rowspan="2">충청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td><td>청주공업 고등학교</td><td>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td></tr><tr><td>충북공업 고등학교</td><td>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td></tr></table> <신설>		명칭	위치	충주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남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	명칭	설치 학교	위치	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	충청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북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별표 7]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 명칭과 위치(제26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설치 학교</th><th>위치</th></tr><tr><td>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td><td>청주농업 고등학교</td><td>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td></tr><tr><td rowspan="2">충청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td><td>청주공업 고등학교</td><td>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td></tr><tr><td>충북공업 고등학교</td><td>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td></tr></table> [별표 8]	명칭	설치 학교	위치	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	충청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북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명칭	위치																															
충주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남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																															
명칭	설치 학교	위치																														
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																														
충청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북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명칭	설치 학교	위치																														
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																														
충청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북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2] <u>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48조 관련)</u>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1</td><td></td></tr> <tr> <td>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td><td></td></tr> <tr> <td>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td><td></td></tr> <tr> <td>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td><td></td></tr> <tr> <td>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td><td></td></tr> <tr> <td>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td><td></td></tr> <tr> <td>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td><td></td></tr> <tr> <td>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td><td></td></tr> <tr> <td>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td><td></td></tr> <tr> <td>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td><td></td></tr> <tr> <td>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td><td></td></tr> </table> [별표 3] <u>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9조 관련)</u>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제천학생회관</td><td>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td></tr> </table>	명칭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명칭	위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u>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제37조의2 관련)</u>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충원도서관</td><td>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td></tr> </table> [별표 9] <u>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46조의5 관련)</u>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제주수련원</td><td>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괭지9길 29</td></tr> </table> [별표 10] <u>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48조 관련)</u>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삭제></td><td><삭제></td></tr> <tr> <td><삭제></td><td><삭제></td></tr> <tr> <td>보은도서관</td><td>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td></tr> <tr> <td>옥천도서관</td><td>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td></tr> <tr> <td>영동도서관</td><td>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td></tr> <tr> <td>진천도서관</td><td>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td></tr> <tr> <td>괴산도서관</td><td>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td></tr> <tr> <td>증평도서관</td><td>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td></tr> <tr> <td>음성도서관</td><td>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td></tr> <tr> <td>금왕도서관</td><td>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td></tr> <tr> <td>단양도서관</td><td>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td></tr> </table> [별표 11] <u>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9조 관련)</u>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제천학생회관</td><td>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td></tr> </table>	명칭	위치	충원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명칭	위치	제주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괭지9길 29	명칭	위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보은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옥천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영동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진천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괴산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증평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음성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금왕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단양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명칭	위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명칭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명칭	위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명칭	위치																																																																
충원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명칭	위치																																																																
제주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괭지9길 29																																																																
명칭	위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보은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옥천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영동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진천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괴산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증평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음성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금왕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단양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명칭	위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현행	개정안								
[별표 5]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51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r><tr><td>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td><td>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td></tr></table>	명칭	위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별표 12]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51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r><tr><td>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td><td>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td></tr></table>	명칭	위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명칭	위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명칭	위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건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참발 여부	
지성훈	제10조제6호	○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에서 볼 때 과학과 기술을 각각 의미하기보다는 과학기술로 붙여서 보아야 하고, ○ 본청 부서명이 과학기술과, 과학실업교육과를 거쳐 현재 과학직업교육과로 변천하였으나, 이후 직속기관의 조례를 꼼꼼히 따져 수정하지 못하고 과거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도 “과학교육의 내실화”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점 ○ 교육과학연구원은 「과학교육 진흥법」 제2조제2호다목에 의한 과학교육연구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학교육”으로 정리되어야 함	“반대”	“일부반영” ○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순수 기술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학·수학·기술교육을 과학·수학교육으로 반영
	제10조제6호 제10조제10호 제10조제11호	○ 교육과학연구원의 설치 목적은 안 제8조에서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으로 명시되어 있고, ○ 이를 위해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은 기획연구부, 과학교육부, 진로상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 설치 목적과 현재 부서업무 성격으로 볼 때 수학교육이 연구원장의 관장 사무로 하는 것은 성격 상 이치에 맞지 않고, ○ 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이라는 차원이라면 굳이 수학교육만이 아닌 모든 교과영역이 다 해당되므로 특정 교과만 명시한 안 제10조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수학 또는 수학교육은 삭제되어야 함	“반대”	“미반영” ○ 수학의 대중화를 통한 기초학력 제고 및 미래인재를 육성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의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참발여부	
곽은기	제5조의2	○ 2012년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국”으로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더불어 변경할 게 많아 비효율적임 ○ 조직개편의 핵심은 부서명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화합하여, 활기차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핵심을 두어야 함 ○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객관화 할 수 없고, 단지 이미지 개선 정도의 수사적인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반대”	“미반영” ○ 기능 및 역할이 간단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국으로 변경함
	제16조의2	○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미원도서관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중앙도서관장 직급(3급)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서관법 제30조 규정대로 사서직 관장을 임명하여 전문성을 보장해야 함(법령 준수, 소수직렬 존중) 분관설치는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도저히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함 ○ 미원도서관은 청주시교육장의 지휘감독하에 지역도서관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분관으로 할 경우 관장 역시 행정직으로 보직하여 전문성과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충주학생회관 사례에서 우려됨)	“반대”	“미반영” ○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수를 정비하고자 분관으로 미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 중앙도서관장 직렬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없는 내용임
	제37조의2	○ 충주학생회관은 설치 당시(2010. 10. 29.) 개정된 도서관법(2006. 10. 4.) 및 정부의 유권해석(2007. 12. 28.)을 위반하여 도서관을 폐지하고 명칭을 “학생회관”으로 부당하게 변경해, 설치하였으므로 본래 명칭인 “도서관”으로 환원하고 관장은 법률(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당연히 사서직으로 보직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법령준수는 물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특정직렬 이익을 위해 소수직렬과 약자들을 관	“반대”	“미반영” ○ 충주학생회관은 도서관과 문화·예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학생회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 충주학생회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수를 정비하고자 분관으로 충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며, ○ 충주학생회관장 직렬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없는 내용임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참발 여부	
		행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였던 행태들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됨 ○ 학생회관 분관으로 하려는 중원도서관 역시 학생회관장 직급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분관으로 설치 시 관장을 법령과 전문성에 관계없이 행정직으로 보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지역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도록 충주시교육장의 지휘감독하에 “공공도서관”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법률적 취지나 도서관 기능 활성화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